

# 충청북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(안)

## 심 사 보 고 서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1996년 4월 9일

- 회부일자 : 1995년 4월 9일

다. 상정일자 : 제124회 임시회

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('96. 4. 19) 상정, 질의답변, 의결

#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건설교통국장 송 완 호 )

가. 제안이유

충청북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를 상위법령인 국토건설종합계획법 개정 내용과 일치시키고 '96. 2. 13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으로 변경된 위원회 직명을 정비하여 도심의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○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대한 시건설종합계획(안) 심의를 추가

- 상위법령인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이 개정되어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대한 시건설종합계획(안)을 도심의회 심의후 승인토록 규정함에 따라 금회 도 조례를 정비

○ 도 직제개편으로 변경된 위원회 직명 정비

- 부지사를 "행정부지사"로
- 지역경제국장을 "공업경제국장"으로
- 건설도시국장을 "건설교통국장"으로
- 종전의 간사(지역계획과장) 및 서기(지역계획과 지역계획계장)을 "심의회 운영을 주관하는 과장" 및 "업무주관 계장"으로 각각 정비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국토건설종합계획법 개정에 따라 충청북도 건설종합계획 심의조례중 일부 조항을 상위법에 부합토록 개정하고 도 직제개편에 따라 직명 변경된 당 조례 심의회 위원 명칭을 변경코자 하는 개정조례인 바,
  - 도, 농 복합형태의 시(충주, 제천)지역의 시 건설종합계획(안)을 당초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에서 도 심의회 심의후 도지사 승인으로 개정하고,
  - 직제개편에 따라 "부지사"를 "행정부지사"로 "지역경제국장"을 "공업경제국장"으로 "건설도시국장"을 "건설교통국장"으로 "간사 및 서기"를 "심의회 운영을 주관하는 과의 과장 및 업무주관계장"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시료됨.

4. 질의 답변 요지 : 생략

5. 토론 요지 : 생략

6. 심사 결과 : 원안가결 (참석위원 6인 만장일치)

7. 소수의견 요지 : 없 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

9. 첨부서류

- 충청북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
- 신구조문 대비표